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일

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-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의결방법을 구체화 함(안 제4조)
- 나.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표 의원을 두고, 대표의원은 의원인 감사의원이 되도록 함(안 제4조의2)
- 다. 위원회에서라도 결산심의 등 필요시 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 및 제8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
“관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3명이상 5명이하”를 “3명 이상 5명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”를
“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”로,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,
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”로
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년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, “있는 자”를
“있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5년이상”을 “5년 이상”으로,
“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”를 “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
있었던 사람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선임방법) 검사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
추천에 따라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선임하되

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대표 위원) ① 감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, 대표 위원은 의원인 감사위원이 된다

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“제51조 및 제53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3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유로 인하여 위”를 “사유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결산검사종료일”을 “결산검사를 종료한 날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본회의에서의 답변)”을 “(의회에서의 답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로, “본회의”를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요구하며”를 “요구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3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2항 본문 중 “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”을 “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규정에 의한다”를 “규정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체납한”을 “체납하였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손상한”을 “손상하였을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“요구한”을 “요구하였을”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“인정한”을 “인정하였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”을 “5호에 따라 위촉 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초래케 한 때”를 “가져올 경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1항에 따라 -- ----- ----- ----- ----- 관 ----- -----.
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한다.	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----- --- 3명 이상 5명 이하-----.
제3조(자격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3조(자격) ----- ----- -----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----- --- 있는 사람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	3. ----- ----- 3년 이상 ----- ----- 있는 사람 -----
4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	4. -----

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
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
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
었던 자

제4조(선임방법) ① 제2조의 규정에
의한 감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
폐쇄 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
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구청장에
게 통보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
된 감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
된다.

〈신 설〉

제5조(감사위원의 직무) ① 감사위원
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제
5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작

----- 5년 이상 -----
----- 사람으로서 5급 이상
의 직에 있었던 사람

제4조(선임방법) 감사위원은 영등포
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
다)의 추천에 따라 영등포구의회
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
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
법」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, 서
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
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

제4조의2(대표 위원) ① 감사위원 중
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, 대표 위
원은 의원인 감사위원이 된다

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
사무를 총괄하고, 의회의 요구
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
검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
의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직
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감사위원의 직무) ① -----
----- 제51조 및 제
53조에 따라 -----

성하는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한다.

②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감사위원은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6조(본회의에서의 답변)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감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----.

② -----

----- 30일 이내 -----
----- . ----- 사유
로 -----

-----.

③ ----- 제3항에 따른 -----

-----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의회에서의 답변) -----
----- 인정할

----- 본회의 또는 위원회 -----
-----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-----

- 요구하여 -----
-----.

제8조(실비보상) ①구청장은 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검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한다. 다만,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.

제9조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(생략)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.

1.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
3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

제8조(실비보상) ① -----

-- 3호에 따른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
결산검사를 종료한 날----- . ---

-----.

제9조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각 호
의 어느 하나-----
----- .

규정에 따른다.

1. ----- 제5조에 따
른 -----

2. -----
----- 체납하였을 --
3. ----- 손상

한 때

4.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
요구한 때

5.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
한 때

③ (생략)

제10조(검사위원의 제재) ① 검사위원
이 제9조 제2항의 3, 4, 5호의 규
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
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
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
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
조치할 수 있다.

하였을 --

4. -----
요구하였을 --

5. 그 밖의 ----- 인정
하였을 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검사위원의 제재) ① -----
----- 5호에
따라 위촉 해제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가져올 경우 -----
-----.